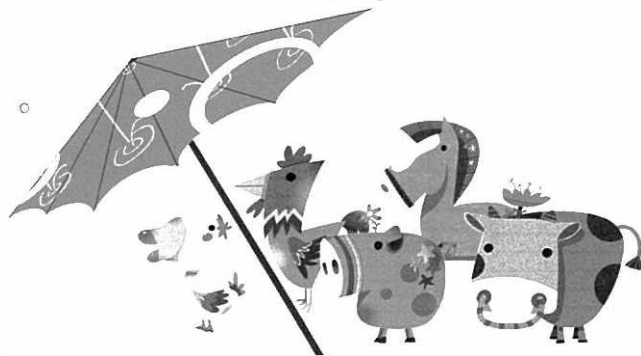


폭염, 강풍, 홍수, 폭설 등 대비한 가축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보상해 줘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보험이다. 2001년 농수산물 등의 재해를 보험으로 보장하는 '농어업 재해보험'이 도입된 후 2009년 「농어업 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됐고,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입대상 품목 확대와 손해평가 기간 감축 등 농어업 재해보험 개편이 진행 중이다. 다만 가축의 경우는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소, 돼지, 말, 닭, 오리, 사슴, 양, 토끼 등 현행 16종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입·보장기간 1년, 정부가 50% 지원

농어업 재해보험의 일종인 가축재해보험은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20~25%의 추가지원을 한다. 때문에 지자체가 얼마를 지원하느냐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농가 부담액이 다르다.

보험 판매는 NH농협손해보험에서 하고 있는데 공익적 보험의 성격을 띠는 만큼 단순한 보험금 지급에 그치고 않고 지자체와 연결해 사망가축의 유통을 막고 가축의 방역위생 등 후속 대책까지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기간과 보장기간은 1년 소멸성이며 가입대상은 표와 같다.

2012년부터 폭염 특약 도입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지속한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가축피해가 커지자 지난해 '폭염' 특약을 신설했다. 닭이나 오리 등의 가금류와 돼지가 가입 대상이다. 따라서 해당 축산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 폭염 재해보상 추가 특약에 들었다면 돼지와 가금류 등이 더위로 폐사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나 말의 경우는 이미 기존 가축재해보험 주계약 안에, 사슴,

양, 오소리의 경우는 가축재해보험 특약 중 사망·긴급도축확장보장 특약을 통해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를 보장해 왔다. 따라서 지난해 돼지와 가금류 폭염 특약 신설로 가축의 폭염 폐사를 대부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화재 대물배상 특약도 신설했다. 축사 특약 가입자에 한해 금년 들어 지난 4월부터 화재 대물배상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는 축사화재로 인해 인접 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축사 특약의 경우는 화재는 물론 강풍이나 홍수, 폭설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주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손실만 보상해 주는 일반 화재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축사 특약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가설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적법한 건물임이 확인되면 이 또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태풍 불라벤 영향 '오리' 보상 가장 커

그렇다면 지난해 보험금 지급현황은 어땠을까? NH농협손보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가금농가의 가입금액은 총 3000억 원 수준. 보험료는 130억 원이 납부됐고, 돼지는 가입금액 2조 원, 보험료 440억 원이 납부됐다. 보험금은 가금의 경우 710건 약 136억 원, 돼지는 총 622건 약 270억 원이 지급됐다.

보상 내용을 보면 돼지나 가금류 모두 질병 피해보다는 태풍 불라벤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리 사육 밀집지역인 전남 피해가 컸던 관계로 보험사 손해율을 보면 돼지 58.5%, 닭 84%인데 반해 오리는 327.5%의 기록적인 손해율을 기록했다. 돼지는 화재나 전기위험 등의 보상건수가 많았고 폭염피해 지급현황도 73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약**

가입대상

구 분	소		돼지	말	가금	기타 가축	축사 (공통특약)
	한우·육우·젖소	종모우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육우 - 생후만 2개월 이상~13세 미만 ·젖소 - 생후만 2개월 이상~8세 미만 	한우젖소	제한 없음	종빈마/종모마 경주마/육성마 일반마	닭/오리/꿩/ 메추리/타조/ 거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슴 양 - 생후 2개월 이상 ·꿀벌/·토끼 ·오소리 	가축사육 건물 및 관련시설
가입형태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지원비율	납입 보험료의 50%						